

제 2 절

선거관리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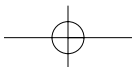


: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



국회는 2007년 7월 3일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정치관계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동 특위의 활동기한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의견을 종합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8년 2월 21일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후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에 공포되었다.

한편, 당초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논의의 범주를 대통령선거에 직접 적용할 사안에 한정함으로써 2007년도에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01| 「정치관계법」 개정 경과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와 국회의 관련규칙에 따라 제18대 국회의 원선거를 2개월여 앞둔 2008년 1월 18일 총 11인의 위원(중앙선관위 추천 1인, 국회의장 추천 2인, 교섭단체 구성정당 추천 각 4인)으로 구성되었고, 2008년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아홉 차례의 전체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기준,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요지, 외국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기준 및 사례에 관한 검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2차 회의(2008. 1. 23)에 법제기획관이 출석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한 고려사항, 선거구획정이 지연될 경우 문제점, 지역구 분구에 따른 검토의견, 제13대 이후 국회의원지역구 현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 등을 설명하였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8년 2월 15일 제9차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현행을 유지하되, 지역구의석수는 제17대보다 2석을 늘리는 안과 4석을 늘리는 안 등 2개안으로 의결하여 같은 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활동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원발의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다. 2008년 2월 21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은 여야 간사합의로 제출한 수정안을,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결과를 각각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선거구획정에 관하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고한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인구하한선 104,000명, 인구상한선 312,000명으로 하여 최대·최소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 대 1로 결정하여 선거구를 직접 획정하였다.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

2008년 2월 22일 제2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2008년 2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08년 2월 29일에 공포되었다.

| 02 |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

공직선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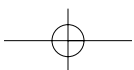
(가) 선거구 획정

제18대 국회의 의원정수는 제17대 국회와 동일하게 총 299인을 유지하되, 지역구의석수는 제17대 국회보다 2인이 증가한 245인,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는 제17대 국회보다 2인이 감소한 54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가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 개최 장소에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경선운동 방법을 확대하였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5인 이내까지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에서는 10인 이내의 전국연설원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연설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전국 어디에서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다) 인센티브 제공 등 투표참여 우대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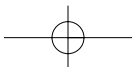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우대제도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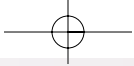
또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라) 정책선거의 구현

정책선거 구현을 위하여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 중 100분의 50 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게재를 의무화하였다.

한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1종의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작성·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 공약집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게재를 의무화하고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 중 100분의 10을 넘길 수 없도록 하였다.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 ● ●

또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게재를 의무화하고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으로 제한하는 등 정책선거의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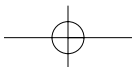
아울러, 언론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며 관련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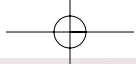
(마) 선거의 공정성 강화

선거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였다.

또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시 해당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1책으로 작성하여 다른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봉하여 매 세대에 우송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선거부정감시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의 정당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바) 당내경선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도 투표 및 개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정당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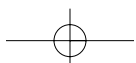
(사) 기타 제도개선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였고, 기부를 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 또는 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다.

정 당 법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당대표 경선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자금법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계상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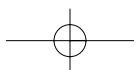
또한, 10만원 이하의 소액 정치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의 기부내역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 당내경선 위탁관리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 및 여야 정권교체와 당체제 정비에 따른 시간적·물리적 문제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정당이 당내경선 없이 각 선거구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통합민주당은 50개 선거구만을 여론조사 경선으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비례대표후보자만을 경선으로 각각 정당에서 자체 실시하였다.

통합민주당의 경우 당헌에 원칙적으로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한나라당은 경선을 통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이들 정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본격 도입된 상향식 공천이 자취를 감추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직정비 및 인력 확보



| 01 | 위원회 조직정비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전체 위원회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보다 대폭(10,234개) 축소되었다.(표 2-1)

선거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시·군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44개, 제4회 지방선거 250개에 이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248개가 되었고, 투표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한 읍·면·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 통폐합 등에 따라 불과 4개월여 전에 실시한 제17대 대통령 선거시보다 118개가 축소되었다.

한편, 사무처는 2006년 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여 그동안 별도로 편성·운영해 오던 선거관리단을 편성하지 않고 상시조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다.

[표 2-1] 각급 위원회 및 위원정수

(단위 : 개, 명)

구분	합계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투표구
제17대 국선	14,041	1 (9)	16 (9)	244 (9)	-	13,780 (7)
제18대 국선	3,807	1 (9)	16 (8)	248 (8)	3,542 (6)	- (-)
증감	Δ10,234	- (-)	- (Δ1)	4 (Δ1)	3,542 (6)	Δ13,780 (Δ7)

주) () 는 각급위원회 위원정수이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인력운영 현황은 [표 2-2] 참조



| 02 | 선거관리인력 확보



투표관리요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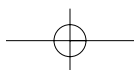
이번 선거에 투입된 선거관리 인력은 총 347,928 명으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383,413명보다 35,485명(9.3%) 줄어들었다. 선거관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 분야별·시기별 소요인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관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나 임시고용원을 자체 또는 공개모집하는 등 필요인력을 조기에 확

보하였고 확보한 인력에 대하여는 담당업무를 하자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실습·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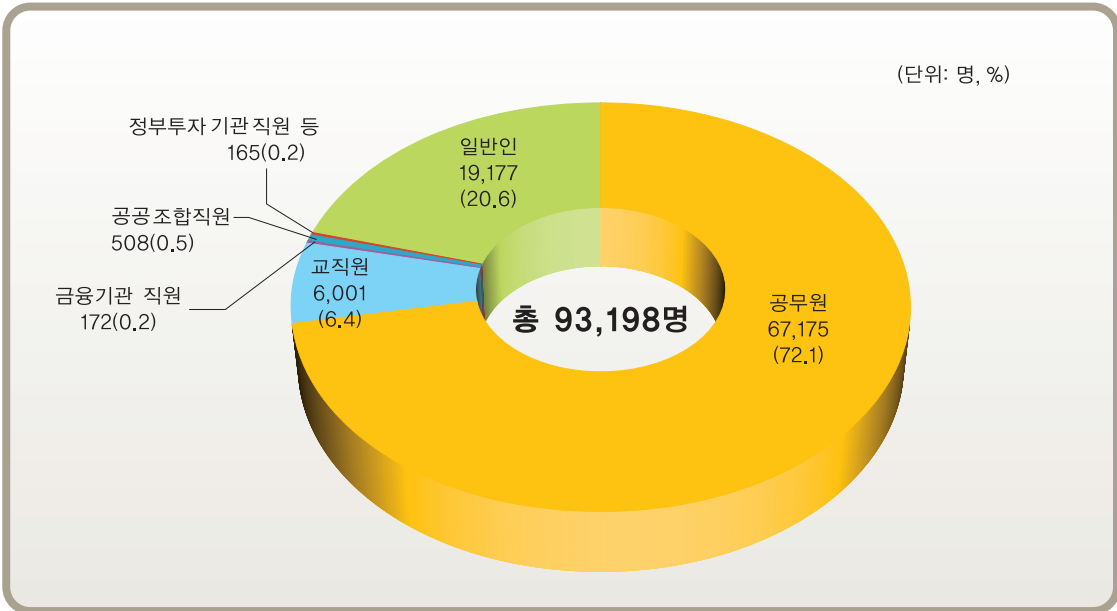
또한, 공무원·교원단체에서 갈수록 선거사무인력 지원을 기피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투·개표사무원 중 투표사무원은 20.6%(19,177명), 개표사무원은 40.7%(15,439명)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인으로 위촉하는 등 선거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였다.(그림 2-1, 2-2)

투표사무원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수를 합하여 총 106,444명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 투표구위원회와 투표사무원을 합한 수인 146,166명에 비해 39,722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투표구위원회 폐지에 따라 전체적인 투표관리 인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제17대 대통령선거시 103,665명에 비해서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투표참여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투표확인증을 교부할 인원이 추가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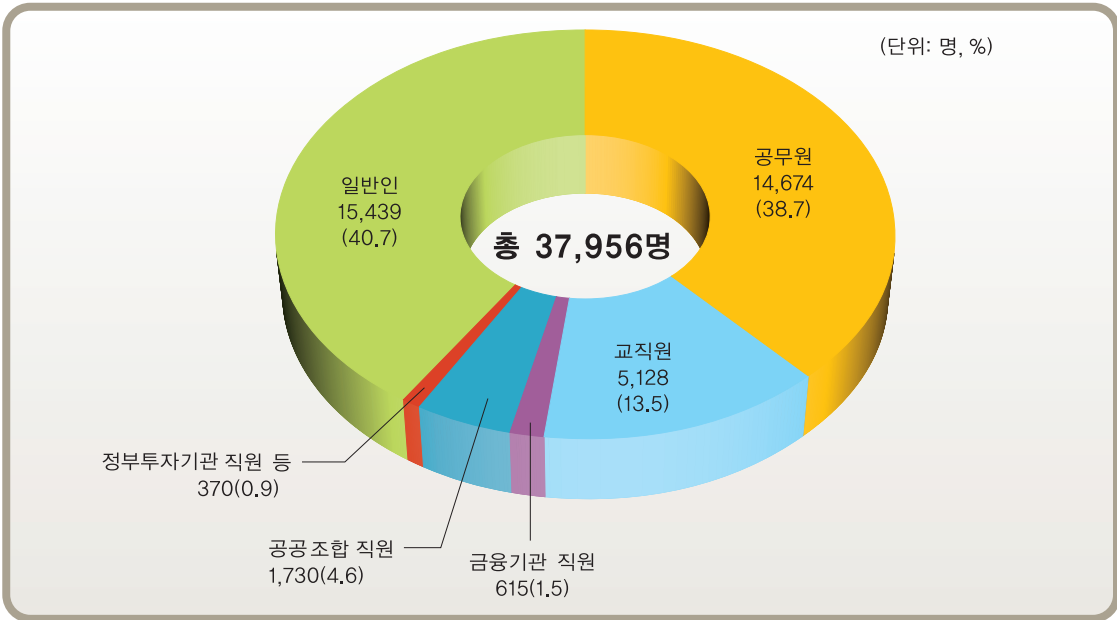
한편, 개표사무원은 투표지분류기 운영대수를 늘리고, 심사·집계부에서의 철저한 육안 확인 심사를 위해 인력을 보강한 결과 총 37,956명을 위촉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 31,761명보다 6,195명이 증가하였다.



[그림 2-1] 투표사무원 위촉현황



[그림 2-2] 개표사무원 위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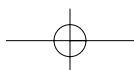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표 2-2】 선거관리인력 운영상황 (세부내역)

(단위 : 명)

구 분	제18대 국선(A)	제17대 국선(B)	증감(A-B)	비고
합 계 (협조요원 제외시)	347,928 (329,108)	383,413 (347,556)	△35,485 (△18,448)	
위 원	22,146	83,022	△60,876	
중 양	9	9	-	
시·도	128	144	△16	
구·시·군	1,966	2,138	△172	
읍·면·동	20,043	-	20,043	· 신설 ('05. 8. 4)
투 표 구	-	80,731	△80,731	· 폐지 ('05. 8. 4)
직 원	2,648	2,302	346	
중 양	309	171	138	· 전자추진단 등 신설
시·도	500	426	74	· 관리담당관 등 신설
구·시·군	1,839	1,705	134	· 정원 증가
선거사무 보조	559	2,791	△2,232	
파견공무원	142	2,037	△1,895	· 지방공무원 파견자제
공익근무요원	417	754	△337	· 공익요원 자원부족
투표관리 (투표구관련 위원포함시)	241,640 (263,623)	202,144 (282,875)	39,496 (△19,252)	· 투표구→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7,032	-	7,032	· 읍·면·동 간사·서기
투표관리관	13,246	-	13,246	· 신설 ('05. 8. 4)
투표사무원	93,198	65,435	27,763	· 투표확인증 발급담당 증설
안내도우미	46,416	47,115	△699	· 중·고학생 2개조 반일근무
투표참관인	81,748	89,594	△7,846	· 정당·후보자 추천
부재자투표관리	6,634	5,968	666	
투표사무원	2,699	2,542	157	· 부재자투표소 증가(34개)
투표참관인	3,935	3,426	509	· 상동
개표관리	45,914	40,013	5,901	
개표사무원	37,956	31,761	6,195	· 심사·집계부 인력보강
개표참관인	7,958	8,252	△294	· 정당·후보자 추천
위법행위 감시·단속	9,567	11,316	△1,749	
선거부정감시단	9,347	10,996	△1,649	· 교섭단체 구성 정당수 감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220	320	△100	(3개→2개)
선거사무협조요원	18,820	35,857	△17,037	
경비경찰(1)	-	15,521	△15,521	· 투표소 순찰로 대체
경비경찰(2)	14,355	15,699	△1,344	· 개표소 경비
전기·소방·의료등	4,465	4,637	△172	· 개표소 안전사고 대비

※ 인력현황은 선거일(2008. 4. 9) 기준이며 직원은 정원임.



· 선거관리요원 등 교육·연수



| 01 | 선거관리연수회 개최

선거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직위별, 위원회별로 선거관리연수회를 개최하였다.(표 2-3)

특히, 이번 선거가 제17대 대통령선거 직후 곧바로 실시되고, 지역 선거구별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6급 이하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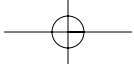
선거관리교육 (2. 13. 강원도)

회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위원회 주관 교육은 5급 이상 간부만을 대상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관리 방침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한편, 직원연수회는 선거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취약분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관리능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함으로써 역대 어느 선거보다 하자가 없는 선거관리를 할 수 있었다.

[표 2-3] 선거관리연수회 개최상황

대 상	개 최 일	인원수	방 법	연수내용
5급 이상 간부직원	2.12~2.15	447명	2개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대 국선관리 방침 시달 선거환경변화에 따른 분야별 업무추진 방향
실무직원	2.20~2.27	1,898명	시·도별 자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대 국선 업무분야별 지침시달 및 선거실무능력 제고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분야별 관리방안



|02| 정당 및 외국의 선거관계자 등 연수

선거연수원에서는 「정치관계법」의 연수를 통한 선거관계자의 준법의식 고취와 교원, 대학생, 일반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식 개선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과 책임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표 2-4)

특히,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각 정당과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정치지도자과정을 개설하고 입후보준비,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회계사무 등 국회의원선거 관련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교육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언론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에게는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언론·시민단체의 역할을 높이고, 교원·대학생 등에게는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및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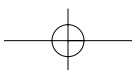
한편,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하여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12명), 동남아시아·아프리카의 선거관계자(13개국 15명)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우리나라의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소개, 투·개표소 등 선거현장 참관 등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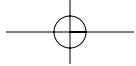


캄보디아 중앙선관위 위원 대상 전자투표시스템 시연
(3. 10. 중앙과천청사)



13개국 외국선거관계자 중앙위원회 방문
(3. 27. 중앙과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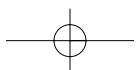




[표 2-4] 정당 및 외국의 선거관계자 연수상황 (각급위원회 실시분 포함)

(단위 : 회, 명)

구분	과 정 명	회 수	연수인원
총 계	-	9,411	369,975
정당·선거관계자 등	핵심당원 연수	3	700
	정치지도자 과정	4	626
	중앙단위 선거관계공무원 출강 연수	18	830
	중앙단위 위탁선거관계자 출강 연수	1	60
	지역 선거·정당·후원회관계자 연수	1,874	30,145
	지역 선거관계공무원 연수	1,043	76,906
	지역 위탁선거관계자 연수	291	10,249
여론형성층	시민·사회단체회원 연수	3	477
	중앙 언론관계자 연수	1	62
	지역 언론관계자 연수	527	2,479
	지역 여론형성관계자 연수	5,339	207,088
교원 및 대학생	교원 직무연수	2	89
	교원 일반연수	4	187
	대학생 미래정치지도자 캠프	1	74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3	96
	대학생 민주시민의식 연수	1	40
	대학생 출강 연수	5	210
미래유권자	청소년리더 연수	6	405
	각급 학교 학생 연수	281	38,595
일반유권자 등	평생교육시설 연수	1	180
	「정치관계법」 공개강좌	1	450
외국 선거관계자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	12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선거관계자 연수(13개국)	1	15





선거관리 장비·용품 개선 및 수급



|01| 장비·용품 개선



투표소 설비 용품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장비·용품은 2008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전 직원 대상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한 장비·용품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작함으로써 장비·용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일괄제작이 효율적인 투표함·종이기표대·기표용구 등 주요품목 외에는 시·도에서 자체 제작토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비·용품의 개선된 제작사양을 담은 『선거장비·용품 제작 매뉴얼』을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 배부·활용토록 하여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개선한 장비·용품의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한편, 상급위원회 제작 용구·용품은 제작업체에서 구·시·군위원회로 직접 배송하도록 하여 시·도위원회의 분류작업, 구·시·군위원회의 출장 수령 등의 불필요한 인력·예산·시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02| 장비·용품 수급

2008년 1월 7일 선거장비 및 용구·용품 제작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시달하고 1월 25일 선

거장비·용품의 개선된 제작사양을 담은 ‘선거장비·용품 제작매뉴얼’(인쇄파일 CD 포함)을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 배부하여 각급 위원회별로 해당 품목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일괄제작이 효율적인 투표함·종이기표대·기표용구·계수기와 부재자투표소용품·각종 교육교재 등 15종은 중앙위원회에서, 공보봉투·투표관리용품·선전벽보판 등 10종은 시·도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등 6종은 구시군위원회에서 제작하였다.(표 2-5)

그중 종이투표함은 지역구, 비례대표용 2종(백색·연두색)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우천대비용 비닐봉투를 뚜껑 안쪽에 내장시켜 투표일 우천에도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투표지 촬영주의문’을 종이기표대와 기표막에 직접 인쇄하여 종전 별도의 주의문을 제작·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제작비용도 절감하였다.

특히, 선거공보용 봉투용지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조달하여 시·도위원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활하게 구매·사용하였다.

한편,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선거공보 발송용봉투 제작방법을 변경한 결과 총 11억 5,000여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어 200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채택되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위 사례가 보도되어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다.

[표 2-5] 주요 선거장비·용품 제작상황

품 목	종이투표함	종이기표대	기 표 용 구
제작수량	백색(지역구), 연두색(비례대표) 각 14,525개	17,580대	89,000개



● 선거관리경비 편성 · 집행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관리비는 총 예산액 2,873억원 중 74.6%인 2,143억원을 집행하였는바, 각급 위원회별로 선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별 ·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특히, 종이기표대 · 투표함 등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선거장비와 용구 · 용품은 중앙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함으로써 용구 · 용품의 규격화 · 통일화를 기하였으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투 · 개표사무관계자의 수당 등을 현실화하였다.(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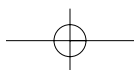
또한, 선거공보 발송용봉투 일괄 제작시 투표안내문을 봉투에 직접 인쇄하여 안내문 등 인쇄비용 12억원과 선거관리정보시스템용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프로그램개발비 21억원 등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다.

[표 2-6] 선거관리비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액	집행률(%)
총 계	287,298	214,342	72,956	74.6
선 거 관 리 일 반	26,608	23,139	3,469	85.8
후 보 자 선 거 운 동 관 리	42,705	22,678	20,027	52.0
투 표 관 리	55,244	37,587	17,657	70.5
개 표 관 리	7,224	7,382	-158	109.1
계 도 · 흥 보	11,017	13,313	-2,296	105.9
위 법 행 위 단 속	41,382	26,428	14,954	64.6
선 거 비 용 및 정치 자금 조사	470	816	-346	161.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운영	236	207	29	89.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	1,642	1,112	530	66.8
정책선거(매니페스토)추진	1,955	991	964	52.2
보 전 비 용	98,815	80,689	18,126	81.7

※ 집행액 중 1,505백만원은 집행예정액임. (7. 30. 현재)



· 선거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01| 선거정보통신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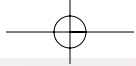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기조는 직전의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검증된 시스템 운영기반 위에 국민의 선거구별 관심 및 정보 접근수 증가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였다.



선거정보시스템 최종 점검

선거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 인터넷 선거정보 조회, 투표소 찾기 및 모바일 서비스 등 다변화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선거정보의 요구 용량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용량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고 최신 기술의 슬림형 웹서버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체계 확보 등 시스템 운영 성능 및 안정성을 배가하였다.

선거정보통신시스템을 받치는 또 한 축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회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사(ISP) 및 주요 통신장비도 이중화하여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갖추었으며, 접속 폭주에 대비하여 통신회선 용량을 적기 증속 조치하였다. 또한, 선거일 개표결과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개표소에 국가기관 전용의 전자정부통신망 인터넷 회선으로 단기 구축된 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9개 방송사 및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다.



| 02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성능 보안장비 도입 등 선거정보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해킹,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 웜·바이러스의 악성코드 유포 등 날로 지능화·복합화되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적극 대처하였다.

웹방화벽을 신규 설치하여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웹서비스 해킹 등 기존 보안시스템이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강하고, 보안취약점 점검도구를 도입하여 취약점 자체 탐지능력을 보유하였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이러스 등 악성 코드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패치 관리시스템과 더불어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선거업무 정보가 생성되는 선거관리 PC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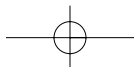
이 밖에도 기존 침입대응 및 암호시스템의 운영 관리와 보안관계 전문업체에 의한 24시간 시스템 보안감시 수행 등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선거정보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반을 확고히 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선거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 종합안내센터 운영



| 01 | 법규운용의 통일성 확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인터넷 및 전화민원 증가에 대비하고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법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종합안내센터에 10명의 인원을 증원하여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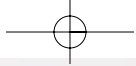


안내 T/F팀을 편성·운영하였다. 2008년 3월부터는 전국 단일전화(1588-3939)의 선순위 수신번호를 일선위원회에 부여하여 단순민원성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통화량을 분산시키고 접속률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친절도와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현안사항 및 인터넷·전화를 통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정리하여 「그룹웨어 법규 코너」란에 매일 게시함으로써 법규운용에 전국적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일일 주요질의 처리상황을 하나의 파일로 모아 그룹웨어에 게시함으로써 일선 위원회의 법규운용에 도움을 주었다.(표 2-7)

[표 2-7] 월별 주요 질의내용

구 분	질의내용	비 고
2007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기념회 개최방법 국회의원의 정책토론회 개최 가능범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가능범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가능한 자의 범위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연하장 발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1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200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작성 및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운영 및 후원금 모금방법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가능 시기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10일부터 의정활동보고 및 출판기념회 금지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후보제한자의 사직시기 및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 예비후보자 명함, 홍보물 등의 게재내용 및 배부방법 후원회의 후원금모금 신문광고 내용·횟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방법 및 공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 후보자등록서류 작성 및 등록무효 사유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의 게재 내용 및 제출 시기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25~3. 26 후보자등록 3. 27~4. 8 선거운동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기간 중 향우회·중친회 또는 동창회 개최 가능 여부 공개장소 연설·대답 개최방법 및 연설대담시 소음규제 가능여부 등 향의 민원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관련 지출비용의 지출계정 및 보전 여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보전 요건 당선·낙선 사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9 선거일



Part 0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 ● ● ●

또한,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당선·낙선사례, 투표확인증 발급 등과 관련한 법규운용 자료를 정리하여 그룹웨어 법규 코너에 게시함으로써 일선위원회가 정당·국회의원·유권자 등 고객들에게 시기별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함께 선거기간 중의 업무경감 및 중앙위원회와 일선위원회 직원 간의 신뢰향상에도 기여하였다.

|02| 찾아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위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야간 및 평일의 전화폭주 등으로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은 전화민원에 대하여는 상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Call-Back 시스템을 이번 선거에서도 계속 운영하였다.(표 2-8)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관련 법규 및 질의선례 등을 함께 안내하고, 답변내용을 민원인의 E-mail로 직접 전송함과 동시에 SMS로 실시간 알려주어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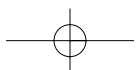
(표 2-9)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사무소에 종합법제정보시스템 검색 등 안내자료를 송부하는 한편 직접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검색방법을 시연하는 등 능동적인

[표 2-8] Call-Back시스템 이용 통화수 (2008. 1. 1~4. 30)

(단위 : 건)

합 계	1월	2월	3월	4월
783	121	117	275	270



안내를 함으로써 과거의 감시·규제 기관이라는 선관위 이미지에서 벗어나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표 2-9] 민원질의 처리실적 (2008. 1. 1~4. 30)

(단위: 건)

월 별	계	전 화	인 터 넷	방 문
합 계	38,991	36,055	2,910	26
1월	5,281	4,806	469	6
2월	6,846	6,225	611	10
3월	16,450	15,456	989	5
4월	10,414	9,568	841	5

※ 종합안내센터로 접수된 전국 단일전화(1588-3939)의 민원질의 처리를 포함함.